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7
----------	-------

발의연월일 : 2022. 12. 9.

발의자 : 민홍철 · 강득구 · 강준현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박재호 · 이장섭 · 임호선

전용기 · 전재수 · 전혜숙

한정애 · 한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그런데 도시철도는 「철도사업법」이 아닌 현행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으므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 제11호 신설 및 제4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현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를 “민자도시철도”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를 “민자도시철도”로 한다.

제43조 전단 중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으로, “제22조 및 제25조부터”를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및 제26조부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를 ““철도차량”은 “도시철
도차량”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
자도시철도운영자”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 ----- ----- ----- ----- ----- <u>제11호에</u> <u>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u> --- -----.
9. (생 략) <u><신 설></u>	9. (현행과 같음) <u>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u>
<u><신 설></u>	<u>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u>

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

⑦ (현행과 같음)